

【 2017.4.20(목)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0일 오후  
5시 흥천국토관  
리사무소를 방  
문, 지역 건설산  
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道 건설산업 발전 간담회 참석



오인철 대한건 설협회 강원도 회장(사진은 20 일 흥천국토관 리사무소에서)

열리는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오 회장은도 내 건설업계의 공사 참여 확대와 예로서항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까다로운 건설분쟁 多 물어보세요”

건설공제조합,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시행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하 조합)은 오는 24일부터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4월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대전권역(5월), 광주권역(6월), 춘천권역(9월), 전주권역(10월) 및 대구권역(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지난 2013년 이후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조합원 법률상담 서비스는 건설분쟁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높다.

법률 상담은 발주처 및 공동수급인 간 분쟁, 하도급 관리, 하자보수 등 건설업 영위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고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법률 상담을 담당하는 조합

사내 변호사는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건설계약 분쟁이 간단한 안내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가 있다”며, “많은 조합원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분야 법률 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내 변호사가 조합원들과 직접 대면하여 알기 쉬운 법률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다”며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지역순회 법률상담 서비스’ 일자 및 장소 등은 상담 예정일 3주 전에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를 통해 공지되며, 조합원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법률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태형기자 kth@

기고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유감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기계설비 분리발주는 법적 문제와 함께 현실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전문건설업체와 민노총 등 노동계, 행자부·기재부·국토부 등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을 원칙적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지방계 약법상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법률 위반 문제, 시공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 곤란과 하자 책임 문제, 그리고 세금 낭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분리발주는 각 공종별 시공이 연속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설산업의 구조를 단절시키고 품질관리는 물론 근로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국 피해가 현장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도 공식적으로 분리 발주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지역 건설업계는 분리발주 조례화 문제로 반복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폐기된 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의 소중한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도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부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보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뿐 아니라 업계 내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논쟁을 이 시점에서 멈추어 건설인 모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생발전 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일이 경기도 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째 시도라는 데 실망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다름 아닌 장현국 도의원이 지난 18일 다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지난해 6월 3일 발의돼 수차례 보류와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그리고 3차례 집회를 거쳐 10월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폐기된 조례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지 두 글자만 추가하여 다시 입법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장현국 도의원은 ‘을’의 입장에서 ‘을’의 눈물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는 개인의 확고한 신념을 실현키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갑’과 ‘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결과론적으로 기계설비업계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조례의 추진 배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우리 종합건설업계는 조례 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